

합병·분할·영업양수도의 상법 절차와 적격 요건, 결손금 승계 점검

회계법인 리파인드

# M&A·합병·분할 제안서

작성일 2026. 11. 2.

REFINED
회계법인 리파인드

T. 02-516-3830 | E. admin@refinedacc.com | W. refinedacc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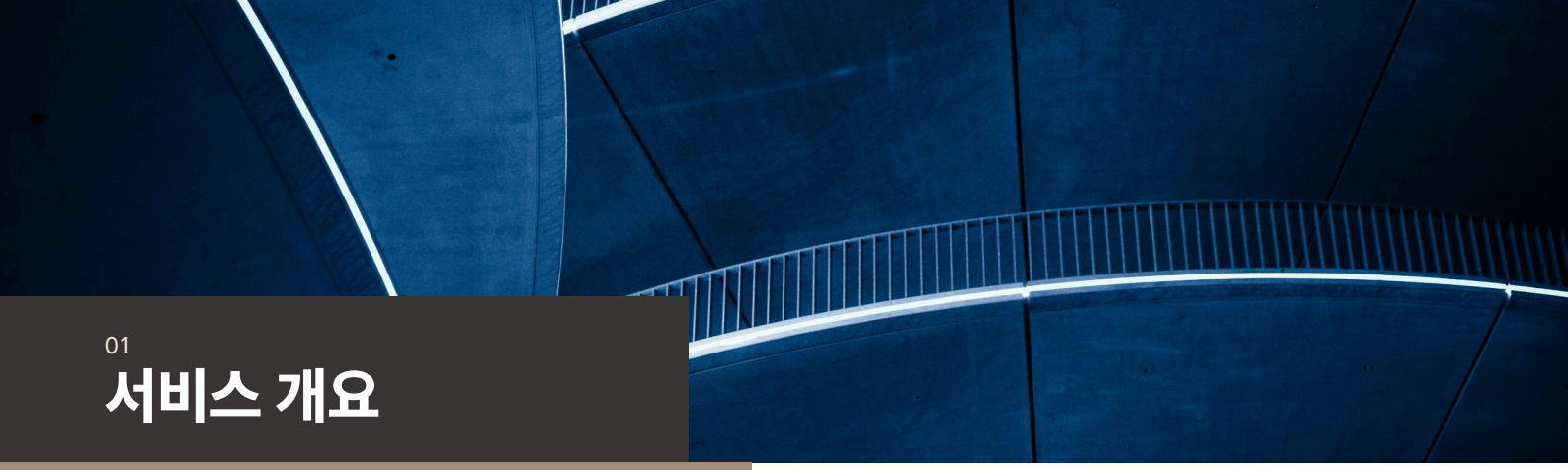

01

# 서비스 개요

적격 요건 4개를 갖추면 합병 양도차익 과세가 이연됩니다

**검토 결론**

합병이 적격이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고 요건을 못 갖추면(부득이한 사유 제외) 합병 사업연도에 양도차익 과세가 생깁니다(법인세법 §44①②).

적격 판정 뒤에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(고용은 3년) 사후관리가 있고 위반하면 이연액이 익금이 됩니다.

## 적격합병 성립 조건 4개

**1**
**사업 1년 이상**
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 간

**2**
**주식 대가 80%**
대가 80% 이상이 합병법인·모회사 주식, 지배주주 등 보유

**3**
**사업 계속**
승계 사업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

**4**
**고용 80% 승계**
1개월 전 근로자의 80% 이상 승계·유지

## 이런 분께

- 합병이나 분할로 그룹 구조를 정리하려는 오너기업 대표
-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합병을 검토 중인 분
- 사업부문을 떼어 분할하려는 분
- 합병 뒤 직원 수 변동으로 추징될지 걱정하는 분

## 서비스 범위와 진행 단계

| | |
|---|---|
| **1 현황 진단** | 두 법인의 사업 연수, 주주 구성, 근로자 수, 결손금, 부동산을 정리해 적격 요건 4개에 하나씩 대입합니다. 요건 하나가 빠지는지를 이 단계에서 가립니다. |
| **2 구조 설계** | 합병, 분할, 영업양수도 안을 세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. 안마다 법인세, 결손금 활용 가능성, 사후관리 부담, 소요 일정을 같은 표에 놓습니다. |
| **3 절차 실행** | 합병계약서, 주주총회 특별결의, 반대주주 매수청구, 채권자 공고와 최고, 등기까지 일정표를 만들고 법정 기한을 하나씩 확인합니다. |
| **4 사후관리** | 등기 이후 사업연도 종료일과 2년, 3년 기한을 일정표에 적고 근로자 수와 자산 처분을 점검합니다.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제출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(시행령 §80의4⑪). |



02

# 합병의 구조와 세금

적격이면 장부가액 승계, 아니면 시가 양도로 과세됩니다

합병은 피합병법인이 해산하면서 자산을 합병법인에 넘기는 거래이고 세법은 이를 양도로 봅니다(법인세법 §44①). 적격 요건을 갖추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어 과세가 이연되고 갖추지 못하면 피합병법인에 양도차익 과세가 생깁니다. 상법 절차와 세법 기준일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한 일정표에 함께 적으면 등기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이 어긋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 도해 1. 합병 거래의 진행 순서

**계약·이사회**
합병계약 조건 확정, 소집통지에 요령 기재

→

**주주총회**
특별결의(출석 2/3, 발행 1/3)

→

**주주·채권자**
매수청구 20일, 공고·최고 2주

→

**합병등기**
적격 요건 판정 기준일

→

**사후관리**
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·3년

### 적격이면 장부가액 승계, 아니면 시가 양도로 과세

적격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.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 간일 것, 합병대가의 80% 이상이 합병법인(또는 모회사) 주식일 것, 승계 사업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할 것, 합병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80% 이상을 승계해 유지할 것입니다(§44②).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경우 등은 4요건과 관계없이 적격으로 보고 사후관리도 없습니다(§44③, §44의3③).

근거: 법인세법 §44①②③, §44의3③, 법인세법 시행령 §80의4③, 서면-2024-법인-4038(2025.3.18)

## 도해 2.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의 결과 비교

법인세 단계의 결과를 항목별로 나눠 비교합니다

| 항목 | 적격합병 | 비적격합병 |
|---|---|---|
| **피합병법인 양도손익** |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(§44②) | 양도가액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을 뺀 차익을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익금에 넣습니다(§44①) |
| **합병법인의 자산 취득가액** | 장부가액으로 승계합니다. 시가와의 차액은 자산조정계정에 계상합니다(§44의3①, 시행령 §80의4①) |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봅니다(§44의2①) |
| **피합병법인 결손금** | 승계합니다. 승계 사업 소득 범위에서 소득의 80%(중소기업 100%) 한도로 공제합니다(§44의3②, §45②⑤) | 승계 규정이 적격합병에만 있어 승계되지 않습니다(§44의3②) |
| **사후관리** |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, 고용은 3년입니다(시행령 §80의4③) | 없습니다. 합병 사업연도에 과세가 확정됩니다 |

피합병법인 주주는 받은 합병대가가 소멸 주식 취득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이 배당으로 의제됩니다(법인세법 §16①5호, 소득세법 §17②4호). 금액은 사안별로 계산합니다.



03

# 실행 전에 확인하는 항목 6개

적격 요건 위반은 양도차익 과세, 사후관리 위반은 이연액 익금입니다

### 1 근로자 80% 계산

적격 요건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 중 80%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(법인세법 §44②4호). 임원, 정년 도래 퇴직 예정자, 일용근로자, 사망·질병 퇴직자, 계약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(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분모에 포함) 등은 분모에서 제외합니다. 분모가 50명이면 40명 이상을 승계해야 합니다. 다만 근로계약 체결 내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부득이한 사유로 봅니다.

근거: 법인세법 §44②4호, 시행령 §80의2①3호 라목·⑥

### 2 주식 대가와 보유

합병대가 중 합병법인(또는 모회사) 주식이 80% 이상이어야 하므로 금전은 20%까지입니다. 주식은 각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가액 이상으로 배정해야 합니다(시행령 §80의2④). 합병등기일 전 2년 안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은,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아니면 발행주식 20% 초과분, 지배주주등이면 취득분 전부에 교부한 주식이 금전 교부로 간주됩니다(§80의2③). 지배주주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하고 교부주식의 2분의 1 미만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입니다.

근거: 법인세법 §44②2호, 시행령 §80의2①1호 가목·③④⑤

### 3 사후관리 위반 계산

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안에 승계 사업을 폐지하거나 지배주주 등이 교부주식을 처분하면 위반입니다. 3년 안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자 수가 두 법인 합계의 80% 미만이어도 같습니다.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으면 폐지로 봅니다. 위반하면 자산조정계정 잔액 총합계액(0보다 클 때만)과 공제한 승계 결손금 전액이 익금이 되고 공제받은 감면·세액공제액은 그 사업연도 법인세에 더해 납부합니다.

근거: 법인세법 §44의3③, 시행령 §80의4③④⑥⑧

### 4 결손금 승계 한도

승계 결손금은 승계 사업에서 난 소득 범위에서만 공제하고 합병법인 자신의 결손금은 승계 사업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. 한도는 소득의 80%(중소기업 100%)입니다. 승계 결손금은 합병등기일을 개시일로 보아 15년 이내 발생분만 쓰고 합병법인 자신의 결손금은 개시일 전 15년 이내 발생분을 씁니다. 승계 사업과 기존 사업은 회계를 나눠 기록합니다.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은 구분경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근거: 법인세법 §13①, §45①②⑤, §113③, 시행령 §81①②

### 5 합병비율과 증여세

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합병비율이 한쪽에 유리하면 대주주등에게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(상증법 §38①). 대주주등은 지분 1% 이상이거나 액면가액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입니다. 이익이 합병 후 법인 주식등 평가가액의 30%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제외됩니다(상증령 §28②④). 법인세 적격 여부와 별개이므로 계약 전에 양쪽 주식 평가액부터 맞춥니다.

근거: 상증법 §38①, 상증령 §28①②③④

### 6 분할 요건과 절차

적격분할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독립 사업부문을 포괄승계 방식으로, 분할법인만 출자해 분할하는 경우입니다.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하고(분할합병은 80% 이상, 상대방 법인은 1년 이상 사업), 주식 보유, 사업 계속, 근로자 80% 승계·유지가 붙습니다(법인세법 §46②1~4호). 부동산임대업 주업 부문은 제외하고(§46③), 사후관리는 2년, 고용 3년입니다(시행령 §82의4③). 분할계획서는 특별결의로 승인하며(상법 §530의3①②) 반대주주 매수청구는 분할합병에만 있고 단순분할에는 없습니다(§530의11②). 분할 전 채무는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연대해 변제합니다(§530의9①). 단순분할은 계획서에 정하면 신설회사가 승계 채무만 부담하고(②), 분할합병도 계약서에 정하면 승계회사 등이 승계 채무만 부담합니다(③). 단순분할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따릅니다(④).

근거: 법인세법 §46②③, 시행령 §82의4③, 상법 §530의3·§530의9①②③④·§530의11



04

# 판정 순서와 일정

상법 절차와 세법 기한을 한 일정표로 맞춥니다

## 도해 3. 합병 절차 일정

**계약 조건 확정**
합병비율과 대가 구성 등 세무 조건을 확정하고 이사회 결의 일정을 잡습니다. 계약 문안은 법무 전문가가 정하며 소집통지에 요령을 적습니다(상법 §522②).

**주총 전**
주총 2주 전부터 합병계약서 등을 본점에 비치합니다(§522의2①). 반대주주는 총회 전 서면으로 반대를 통지해야 합니다(§522의3①).

**결의일부터 2주**
1개월 이상의 이의 기간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최고합니다(§527의5①). 이의 채권자에게는 변제나 담보를 제공합니다(§232).

**결의일부터 20일**
반대 주주의 매수청구 기한입니다(§522의3①). 매수청구 금액이 크면 회사가 대금을 부담하므로 계약 전에 반대 가능성이 있는 주주의 지분을 집계합니다.

**등기일 이후**
합병무효의 소는 등기일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합니다(§529②). 세법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(고용 3년)을 일정표로 관리합니다.

## 도해 4. 판정 순서

| 단계 | 판정 내용 |
|---|---|
| **1. 100% 지분관계** |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거나 같은 법인이 두 회사 주식을 전부 소유하면 적격으로 봅니다. 사후관리도 없습니다(법인세법 §44③, §44의3③). |
| **2. 4요건 대입** | 사업 1년, 주식 대가 80%, 사업 계속, 근로자 80% 승계를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합니다(§44②). |
| **3. 부득이한 사유** | 주식 처분, 사업 폐지, 고용 하락이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적격이 유지됩니다(시행령 §80의2①, §80의4⑦). |
| **4. 결손금 공제** | 승계 결손금은 승계 사업 소득 범위, 80%(중소기업 100%) 한도로 공제합니다. 구분경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(§45, §113③). |
| **5. 위반 시 익금** | 자산조정계정 잔액과 공제한 결손금 전액이 익금이 됩니다(시행령 §80의4④). 합병매수차익은 손금에 넣고 5년간 월수 비율로 나눠 익금에, 합병매수차손은 익금에 넣고 §80의3② 요건에서만 나눠 손금에 넣습니다(§80의4⑤). |
| **6. 취득세 감면 확인** | 합병으로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은 중소기업 간 또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적격합병일 때 취득세 60% 경감(지특법 §57의2①), 적격분할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50% 경감(③2호)이며 둘 다 2027.12.31까지 취득분입니다. 분할은 등기일부터 3년 이내 사후관리 사유가 생기면 추징합니다. |

## 보수

**보수는 상담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.**

두 법인의 재무제표, 주주명부, 근로자 명부를 받아 작업 범위를 확정한 뒤 범위별로 제시합니다.



05

# 자주 묻는 질문과 담당자

문의는 대표번호로 받습니다

**Q1. 반대하는 주주가 있으면 합병을 못 하나요?**

특별결의 정족수(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,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)를 채우면 반대 주주가 있어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(상법 §522①③, §434). 반대 주주는 총회 전 서면 통지 후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(§522의3①). 소멸회사 총주주 동의 또는 존속회사의 90% 이상 소유 시 소멸회사 주총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(§527의2①). 소규모합병은 신주·이전 자기주식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% 이하이고 주주에게 주는 금전 등이 순자산의 5% 이하일 때 존속회사 주총만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. 20% 이상 주주가 2주 안에 서면 반대하면 쓸 수 없고 이 경우 존속회사 주주의 매수청구권은 없습니다(§527의3①④⑤).

상법 §522, §522의3, §527의2, §527의3, §434

**Q2. 결손금이 큰 회사를 합병하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나요?**

적격합병일 때만 가능성이 있습니다. 결손금 승계 규정이 적격합병에 있으므로 비적격합병이면 승계되지 않습니다(법인세법 §44의3②). 적격이어도 승계 사업에서 난 소득 범위에서, 소득의 80%(중소기업 100%) 한도로만 공제됩니다(§45②⑤). 사후관리 기간 중 위반하면 공제한 결손금 전액이 익금에 들어옵니다(시행령 §80의4④). 절세액은 승계 사업의 장래 소득 추정치와 사후관리 이행 가능성을 함께 반영해 계산합니다.

법인세법 §44의3②, §45②⑤, 시행령 §80의4④

**Q3. 영업양수도로 하면 합병보다 단순한가요?**

절차가 줄어드는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.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 매수청구 절차를 거칩니다(상법 §374①1호, §374의2).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도 같습니다(§374①3호). 법인세는 합병의 적격 이연 규정(법인세법 §44②)이 영업양수도에는 적용되지 않아 양도법인의 양도차익이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들어갑니다(§15①).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. 다만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는 과세됩니다(부가가치세법 §10⑨2호, 시행령 §23).

상법 §374, §374의2, 법인세법 §15①, §44②, 부가가치세법 §10⑨2호

## 담당 회계사

| 이름 | 직위 | 전문 분야 |
|---|---|---|
| **이종헌** | 대표 회계사 | 가업승계·상속증여, 법인 구조 설계, 세무조사 대응, 기업가치평가 |
| **임연희** | 부대표 회계사 | 법인 조세 업무, 중소·중견기업 세무 자문 |
| **이현우** | 파트너 회계사 | 세무조정, 세무조사 대응, 경정청구, 세무진단 |
| **장하리** | 이사 회계사 | 세무조정, 세무자문, 개인 재산제세 업무 |
| **김윤경** | 이사 회계사 | K-IFRS·US-GAAP 감사, 투자회계,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 검토 |
| **박광종** | 세무사 고문 | 국세청 약 40년 근무, 조사·징세·부가가치세 업무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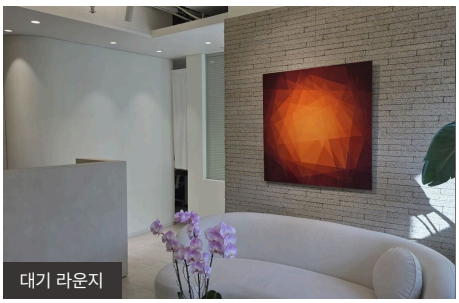
대기 라운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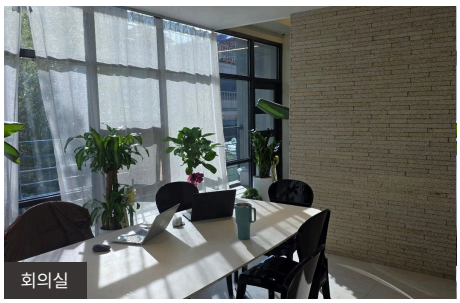
회의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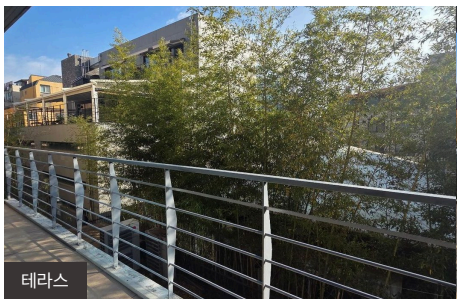
테라스

**T. 02-516-3830 | F. 0507-1790-1496 | E. admin@refinedacc.com | W. www.Refinedacc.com**

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40길 18(크레아빌딩) · 지하철 신사역·논현역에서 각각 도보 5분

상담 내용은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본문의 조문·세율·기한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.